

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

I 사업 개요

□ 목적

-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

□ 사업내용

-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
- 원예농산물 생산·유통 관련 사업(18개)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(지원 자격)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대상자 포함)으로 등록한 농협조직,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
- (등록 요건)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·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(3년)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
 - 품목별 조직화 수준,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·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‘생산유통 통합조직’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□ 지원 내용

- (지원 내용) 원예농산물 생산·유통 관련 18개 사업
- (지원 기준)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

□ 사업신청

-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 신청,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
-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(출자출하조직, 생산자)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

□ 대상자 선정

- 각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①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,
②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우선·우대 지원하는 사업

<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대상 사업>

구분	사업명
통합조직에 한정(7개)	산지유통활성화자금(융자), 공동선별비지원(일반, 지역), APC(일반, 과수거점, 과수유통시설현대화), 산지조직지원
통합조직 우선·우대 (11개)	시설원예현대화, 스마트팜(시설보급), 에너지절감시설, 신재생 에너지시설,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,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, 과실 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, 수급안정계약재배(채소), 채소가격안정 지원,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,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

□ 담당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유통정책과	사무관 김명관 주무관 김상아	044-201-2223 044-201-2224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산지유통부	부 장 배성진 차 장 기 민 과 장 이관규	061-931-1030 061-931-1031 061-931-1096
농협경제지주	산지유통부	팀 장 박진환 계 장 안서연	02-2080-6348 02-2080-6334

1	생산유통 통합조직 정의 및 구성
---	-------------------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정의

- 생산자(조직)과 유통조직의 통합(높은 수준의 계열화)을 통한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축한 생산유통 통합조직
- 생산부문 : 생산농가들이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영농(재배기술, 품질관리 등 통합) 및 통합출하(공동선별 수탁·매취, 공동출하수탁 등)하는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하고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)이 정한 품질 규격, 출하방식, 판매처 등을 준수하여 마케팅 의사결정에 참여
- 유통부문 : 생산자조직과 협력하여 상품화(선별, 포장 등), 판매마케팅, 조직원 농가 영농·경영지도 등을 수행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구성

- 생산자조직 :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복수의 농가가 상호연대(농자재 구입, 공동영농, 재배기술통합, 협력출하 등)하여 결성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또는 출자출하조직)과 출하계약(3년 이상 권고)을 체결하고 이행한 생산농가조직 또는 농업법인(생산형법인)
-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①계약물량 전량(80% 이상)출하(조직원 농가 간 연대·협력을 위한 기초제도), ②출하한 농산물의 판매권한을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)에 위임, ③조직의 재배기술 준수, ④생산정보 제공 등의 활동 수행
- * 동일한 품목 생산농가는 하나의 생산자조직에 가입(다만, 품목이 다른 경우, 동일 품목 재배지역이 원거리에 분리된 경우 예외)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사업계획 수립·추진 및 환경보전·수급관리 등 활동에 참여
- 출자출하조직 : 생산자조직원 농가 영농지도, 수탁·매취사업 관리, 상품화 등을 수행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자출하(또는 출하)하는 농협 또는 농업법인

- 공통사항 : 생산자조직이 출하한 농산물의 전량(또는 일정비율 이상)의 판매 권한을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위임, 생산자조직 관리, 생산유통 통합조직 의사 결정 참여 등
- 출자출하조직 :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자한 주주로서 조직 운영 및 판매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책임역할 수행
- 출하조직 :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자 없이 판매권을 위임하여 출하하는 조직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법적구속력을 갖춘 판매권위임협약서(3년 이상 권고) 작성
- 생산유통 통합조직 : 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
- 사업계획(중기) 수립 및 실행, 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 관리 총괄
- 사업기획·조정, 판매·마케팅 사업운영, 조직의 기능·역할, 책임·권한, 재무 계획 등에 관한 관련 규칙의 제정·운영

2 생산유통 통합조직 요건

1. 기본요건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 : 법인이어야 하며, 법인별 요건은 다음과 같음

- 조합공동사업법인 :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
- 품목농협 또는 지역농협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
 - 광역원예농협 : 사업지역(정관)이 3개 시·군 이상
 - 시·군 합병농협 : 1시·군에 농협이 1개소인 농협
 - 지역(품목)농협연합 : 3개 시·군(또는 2개 도) 이상의 출하조직(농협)으로 구성
 - 지역(품목)농협 : 3개 시·군(또는 2개 도) 이상의 생산자조직으로 구성 또는 동일 시·군 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없고 시·군 내 다른 지역(품목)농협의 동의를 있는 경우
- * 지역(품목)농협연합, 지역(품목)농협은 품목특성, 생산·판매여건, 취급규모, 사업 목적 및 계획 등 고려하여 요건을 별도 심사
- * 대도시 근교농업지역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는 지역 범위를 별도 심사할 수 있음

- 농협경제지주 : 농협경제지주 유통전문 자회사 또는 ‘도’ 지역본부 연합사업단
 - *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정을 받은 조직이어야 하며, 농협 시·군연합사업단 등록 불가
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: 사업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 모두 충족
 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(별표6 :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)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 -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,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, 농업인조합원(주주) 20명 이상
 - *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
 - * 시설하우스(1ha 이상), 대형과원(5ha 이상) 등 대형생산시설을 경영하는 조합원(주주)의 수는 5배수로 인정할 수 있음
 -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주주의 지분이 50% 초과
 - *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, 지자체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한 협동조합 :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%를 초과하여야 함(그 외 요건은 농업법인과 동일)

□ 출자출하조직 : 농협, 농업법인, 협동조합

- 농협 : 지역농협, 품목농협
 - * 농협 등이 출하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 또는 출하조직으로 불인정
- 농업법인 :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,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, 농업인조합원(주주) 5명 이상, 농업인주주 지분 50% 이상(농업회사법인) 등 요건 모두 충족
- 협동조합 : 조합원의 50% 이상 농업인, 그 외 요건은 농업법인과 동일

□ 공통사항

- 임산물류·양곡류(미곡류 제외)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(청과부류, 화훼부류, 약용작물류)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%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하여 사업대상에 포함
-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)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·운영(30%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·임원 겸임 등)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제외

2. 세부요건

- * 취급액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(수수료는 제외)
- * 단,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취급액 및 전속취급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 실적 적용 가능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

- 전문품목을 선정하여 생산·유통을 계열화하고 중기(3년)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직(기존 산지유통 혁신조직)
- 승인요건 : 품목별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을 갖춘 조직
 - * 전문 취급품목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취급품목들의 동질성·연계성 등 필요
 - * (총취급액) 전문 품목(부류)의 총 취급액이며, 판매액으로 산정
 - * (전속출하액) 생산자조직이 통합조직에 출하한 물량의 최종 판매액으로 산정
 - * (전속취급률)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전문 품목 총취급액 대비 전속출하액 비율

< 품목별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 >

구분	과실류		시설원예		노지채소	
전문 품목별 총취급액	80억원 이상		60억원 이상		40억원 이상	
전속취급률 (총취급액 기준)	80~150억원 미만	50%	60~100억원 미만	50%	40~70억원 미만	50%
	150억원 이상	40%	100억원 이상	40%	70억원 이상	40%

- * 과실류 중 참다래·자두·베리류는 60억원, 시설원예 중 오이·호박·가지는 40억원 이상 취급
- * 품목 특성상 고구마는 과실류 기준 적용, 품목 또는 품목부류 기준은 <붙임 1> 참조
 - 전문품목 이외에 전문품목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의 50%이상이면서 승인기간 이내 전문품목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육성하는 육성품목 선정 가능
 - *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은 육성품목 선정 없음

<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 >
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품목 취급액 요건을 완화하고 약정취급 요건을 갖춘 조직('26년에 등록하는 조직까지 한시적으로 인정)
 - * 약정취급 : 생산자조직원 생산의 일부를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과 약정(계약)하여 출하하는 방식(공동선별(수탁,매취), 공동출하)
 - * 다만, 공동출하는 전속출하(계약물량의 80% 이상)를 약정해야함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선정한 전품품목에 대한 약정취급 요건
 - 품목별 약정취급액 : 과수 40억원, 시설원예 30억원, 노지채소 20억원 이상
 - 품목별 약정취급률 : 품목별 약정취급액이 총취급액의 30%이상
- 적용시기 : '24년부터

□ 출자출하조직

- 생산자조직이 출하한 전문품목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판매위임 금액 5억원 이상, 출자출하조직 취급액의 40% 이상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, 생산자조직 출하금액의 50% 이상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

<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의 출자출하조직 >

- 전문품목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판매위임한 약정출하 금액(품목별) 3억원 이상
 - 전문품목 출하율 :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액이 출자출하조직 취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% 이상
 - 적용시기 : '24년부터
- 출자출하조직이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미취급 품목을 다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하하는 경우 복수의 출자출하조직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인정(단, 해당 품목의 출자출하조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)
 - * 동일 품목을 복수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판매위임할 수 없음
 - 출자하지 않고 출하만하는 조직은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판매위임협약서(법적 구속력 확보 내용, 계약기간 최소 3년)를 작성해야 함
 - *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(또는 등록)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함

□ 생산자조직

-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출하금액이 2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, 계약 물량의 전량(80% 이상) 출하
 - * 1 농가는 동일 품목에 대해 1개 생산자조직에만 가입 가능, 단 복수의 품목을 재배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복수 재배지역이 원거리인 경우 복수의 생산자조직 가입 가능

<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 >

- 공동선별(수탁) 생산자조직은 농가 5인 이상, 출하금액 5천만원 이상
- 공동선별(매취) 생산자조직은 농가 5인 이상 권장, 출하금액 5천만원 이상
- 공동출하(수탁) 생산자조직은 농가 5인 이상, 출하금액 5천만원 이상, 계약 물량의 전량(80% 이상) 출하
- 적용시기 : '24년부터

- 공동선별(수탁, 매취), 공동출하(수탁) 농가 모두가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해야 함
 - * 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생산자조직은 생산유통 통합조직(및 출자출하조직) 거버넌스(운영위원회 등)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(대표 등), 관련 회칙, 규칙 등을 수립·운영해야 하며, 생산자조직원의 생산현황 및 출하현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함
 - * 생산자조직의 회칙, 생산자조직원의 생산현황, 출하현황, 약정현황, 출하결과 관리장부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사업결과 점검, 평가, 현장실사 등에서 증빙자료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함

□ 연결실적 인정
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인수·합병 등 사유로 정당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조직의 실적을 연결하여 인정
- (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유형 변경) 시군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도(道) 연합사업단으로 변경, 생산유통 통합조직(舊 산지통합마케팅조직) 간 통합 또는 인정할 수 있는 변경의 경우 기존 조직의 실적을 인정
- (출자출하조직의 소속 변경) 출자출하조직(舊 참여조직)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출하 실적을 연결하여 일정

3	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, 등록 및 사업계획서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, 등록
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3년 기간)를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* 승인 신청서 양식(붙임 3),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자료 목록
- 승인기간 : 3년(사업계획서 기간)
 - * 승인 3년차 하반기에 차기 3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차기 계획 승인 심사
- 승인절차 : 승인신청서 제출, 사업계획서(3년) 제출, 사업계획서 자문컨설팅 및 수정보완, 농림축산식품부 검토, 승인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승인함(10~12월)

-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: 전문품목 및 지원사업별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검토
- 승인심사 : 산·학·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서면 심사를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(대표)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* 자격요건 검토, 승인심사에서 탈락한 조직은 차기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
-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매년 2월 전년 사업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(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 연계)

〈생산유통 통합조직 : 육성형 등록〉

-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은 한시적(26년 등록신청 까지)으로 등록제 실시
- 등록기간은 1년이며,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1년, 등록신청 당해 연도 계획) 제출
 - * 등록신청서를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·신청(2월) 및 사업계획서 제출(3월)
 - * 등록 신청서 양식(붙임4),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자료 목록
- 등록절차 :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1년) 제출, 등록요건 심사 단계를 거쳐 정책지원사업 자격 부여(3월)
 - 등록심사 : 최초 등록시 현장실사단(농식품부, aT, 농협경제지주 등) 구성·운영
 - * 재등록 시에는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서면 검토하고, 재등록 조직 중 일부 조직 (20% 내외)에 대해서 상반기 중 현장실사단(농식품부, aT, 농협경제지주 등)을 구성·운영하여 관리·감독 실시
 - * 현장실사 대상 : 실적 급상승, 등록요건 적합도가 불안정한 조직, 서면평가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조직 등
 - *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을 실시해야 함

□ 사업계획서
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중기(3년) 동안 사업목표, 추진전략,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생산유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
 - *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은 1년 단위 사업계획서 작성
- 사업계획 주요 내용 : 사업현황 및 여건 진단·분석, 사업목표 및 사업전략, 부문별 사업 추진계획, 투자계획 등
 - 사업목표 및 사업전략 : 사업여건 및 추진 목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
 - * 사업목표는 연차별 사업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

- 부문별 사업계획 : 조직구성 및 출하체계, 생산(물량·품질), 상품화(선별, 포장 등), 판매마케팅·물류, 사업조직육성, 수급관리, 환경친화, 디지털혁신 등
- 투자계획 : 사업목표 달성, 사업전략·부문별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투자계획

<부문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>

항목	주요내용
조직구성 및 출하체계	○ 생산자조직, 출자출하조직, 출하조직 등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구성 ○ 생산자조직, 출자출하조직별 전문취급품목별 출하방식·취급방식 ○ 생산자조직, 출자출하조직, 통합조직의 운영규칙, 거버넌스 등
생산부문	○ 생산자조직원 재배기술, 품목 및 품종별 재배면적(재배시설) 등 ○ 품목 및 품종별 생산계획(생산량, 품질) 등 *품질 : 상품성, 품위, 크기 등 시장선호에 적합한 품질의 특성
상품화	○ 산지유통시설(출자출하조직 포함) 운영, 시설 보완 등 ○ 공동선별, 상품개발, 포장재 관리 등
사업조직육성	○ 생산자조직, 출자출하조직, 통합조직의 사업역량 강화 ○ 전문인력 육성
판매마케팅	○ 판매마케팅 계획(물량, 품질별 판매처), 상품개발 등 ○ 산지유통시설 내부 물류효율화, 원물 및 상품 물류 효율화 등
환경친화	○ 생산, 상품화, 물류 부문의 에너지 절감, 탄소배출 절감 등 ○ 생산 및 상품화 단계에서의 식품위생안전 강화
디지털 혁신	○ 생산자조직 및 조직원 농가 재배(생산), 출하, 선별결과, 정산관리 정보화 ○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추진 ○ 판매마케팅, 물류 부문의 디지털 혁신 등
투자계획	○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투가계획 ○ 투자재원의 조달 : 자부담 사업, 지방비 보조사업, 정부 지원사업 등

- 지자체 협의 및 원예산업발전계획 :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사업계획에서 수립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
 - *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계획 표지에 지자체 협의 공무원의 서명 필수
 - *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생산자조직, 출자출하조직, 소재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야 함
 - * 지자체의 지원대상 기준 : 생산자는 농지 및 재배시설의 위치, 유통조직은 주사무소의 위치

- 지자체는 원예산업발전계획(2023~27년) 내용과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계획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
- * 지자체는 협의과정에서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·보완하여 농식품부에 제출(11~12월,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(2월))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사업계획서에 지자체 지원사업을 수립하는 경우,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
- *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관련 내용은 승인 과정에서 제외됨

□ 정부 지원사업 신청

-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 포함) 및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원 농가의 사업 신청계획을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

<원예산업 생산·유통 부문별 정부 지원사업>

구분	지원대상	지원사업
유통부문	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	○ 산지유통활성화사업(용자) 지원사업 ○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(일반) ○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(지역) ○ 산지조직지원사업 ○ APC 건립·보완사업 ○ 과수거점APC 건립·보완사업 ○ (과수)유통시설현대화사업(보완사업)
생산 및 수급관리 부분	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원 농가 (우선선정 또는 우대지원)	○ 시설원예현대화 ○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(시설보급) ○ 에너지절감시설 ○ 신재생에너지시설(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) ○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 ○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○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○ 수급안정계약재배(채소) ○ 채소가격안정지원 ○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
육성분야	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	○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

참고

생산유통 통합조직 등록, 승인 절차

통합조직 신청 (전년 9월)	- o 조직현황 및 실적 - o 중기 사업계획(3년) 제출(지자체 사전 협의)	통합조직 → 정부(aT)
사업계획 승인 (전년 12월)	- o 중기 사업계획 승인('25.12월) *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	정부(aT) → 통합조직
통합조직 등록 및 실적 제출(2월)	- o 통합조직 등록 및 실적 제출('26.2월) * 중기계획 미승인 조직은 육성대상자 등록, 통합 조직 전환계획 제출	통합조직 → aT
등록 요건 확인 (2~3월)	- o 등록 요건 부합 여부 확인(서류 검토) * 향후 허위실적 제출 등 중대 오류가 발견될 경우 통합조직 5년간 등록 금지(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)	aT → 등록 신청조직
사업계획 제출 (미승인조직 4월)	- o 미승인 등록조직 사업계획(1년) 제출 * 통합조직(육성)으로 관리	등록조직 → aT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

- 목적 :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자의 사업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(정부승인) 상 목표 달성 여부 점검 등 전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
- 평가시기 : 매년 2월 (전년 사업실적 집계시기 고려)
 - 연차보고서 제출(농식품부·aT, 2월초) → 연차평가 실시(농식품부·aT, 2월 중순) → 연차평가 결과보고(aT → 농식품부, 2월말)
- 평가대상 : 생산유통 통합조직
- 평가내용 : ▲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 승인요건 적합여부, ▲조직화 협력 및 정책 활성화 기여도(평가지표상 가점) 등 평가
 - 승인요건 : 전문품목 취급액, 전속출하율, 전속취급률 등
- 평가방법 : 산·학·연 전문가 3~5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서면평가 실시
 -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실적 및 개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평가
 -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(대표)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연차평가보고서 기준 승인요건 적합여부, 사업계획의 추진성과 평가
- * 승인 3년차 도래시 차기 3년 사업계획서 승인심사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추진
- 평가결과 : 승인요건 미달, 사업추진 부진, 추진성과 미흡 등의 경우 주의 및 개선요구 조치하고, 2년 연속 승인요건 미달 시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 중도 취소
- *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 포함)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사전에 생산유통 통합조직 동의)

<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 사업결과 점검>

-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은 재등록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(2월초)
-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에 대해서는 재등록시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서면 검토하고, 재등록 신청조직 중 일부(20% 내외) 조직에 대해서 상반기 중 현장실사단(농식품부, aT, 농협경제지주)을 구성·운영하여 관리·감독
- * 현장실사 대상 : 실적 급상승, 등록요건 적합도가 불안정한 조직,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불성실 조직 등

□ 생산유통 통합조직 실적 점검결과 조치사항

- 주의 대상 : 점검결과 제출자료의 오류, 관련 요구자료 제출 비협조, 자료 제출 지연 등의 조직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 감점(최대 △10점)
- 승인(등록) 취소 : 점검결과 고의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조직은 즉시 승인(등록) 취소

참고

생산유통 통합조직 평가지표

항 목		산출식	배점
규모화	취급규모	■ (가), (나) 산식에 따라 산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반영 ○ (가) (전문품목 취급액) ÷ (부류 평균취급액 × 1.2) × 20 * 농협, 법인 분리하여 산정 (분리평가군에 2개 이상 조직이 없을 시 통합 산정) ○ (나) (전문품목 취급액) ÷ (평균취급액 × 1.2) × 20 * 평균취급액 : 해당 전문품목 취급 통합조직의 평균 취급액	20
	전문품목 비중	■ (전문품목 취급액) ÷ (총취급액) × 10 * 총취급액 : 통합조직의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(전문, 육성, 기타품목 포함)	10
	성장률	■ {(금년도 전문품목 취급액-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) ÷ (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)} ÷ 5% × 10 * 성장률 5% 이상 시 만점	10
조직화	전속취급률	■ (가), (나) 산식에 따라 산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반영 ○ (가) (전문품목 전속취급률) ÷ (부류 평균 전속취급률 × 1.2) × 20 * 농협, 법인 분리하여 산정 (분리평가군에 2개 이상 조직이 없을 시 통합) ○ (나) (전문품목 전속취급률) ÷ (품목 평균 전속취급률 × 1.2) × 20 * 평균취급률 : 해당 전문품목 취급 통합조직의 평균 전속취급률	20
	공선 취급비중	■ (전문품목 공선취급액) ÷ (전문품목 취급액) × 10 * 공선취급액 : 통합조직의 전속취급액 중 공동선별(수탁, 매취) 취급액	10
	공선 규모	■ (가), (나) 산식에 따라 산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반영 ○ (가) (전문품목 공선취급액) ÷ (평균 공선취급액 × 1.2) × 10 * 평균 공선취급액 : 해당 전문품목 취급 통합조직의 평균 공선취급액 ○ (나) (전문품목 공선취급액) ÷ (부류 평균 공선취급액 × 1.2) × 10 * 농협, 법인 분리하여 산정 (분리평가군에 2개 이상 조직이 없을 시 통합 산정) * 부류 평균 공선취급액 : 전문품목 부류 취급 통합조직 평균 공선취급액	10
온라인도매	출하 실적	■ (온라인도매시장 판매액) ÷ (부류별 평균 판매액) × 10 * 농협, 법인 분리하여 산정 (분리평가군에 2개 이상 조직이 없을 시 통합 산정)	10
	확대 노력	■ 판매목표 설정률 ÷ 5% * 판매목표 설정률 : (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액 목표-금년도 판매액(또는 기준거래액)) ÷ (금년도 판매액(또는 기준거래액)) × 100 * 단, 설정률 25% 이상 시 만점, 5% 미만 시 0점 * 기준거래액 : 생산유통통합조직의 금년도 전문품목 총취급액의 2% - 금년도 판매액이 기준거래액 미만인 경우 금년도 판매액이 아닌 기준거래액 적용 * 내년도 목표가 생산유통통합조직 총취급액의 20% 이상인 경우 만점	5
	확대 달성도	■ 1 + [(온라인도매시장 판매목표 달성률 - 80%) ÷ 5%] * 달성률 : (금년도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액) ÷ (금년도 판매액 목표) × 100 * 단, 달성률 100% 이상 시 만점, 80% 미만 시 0점	5
합계			100
가 점		■ 생산자조직·출자출하조직 등 계열화조직, 지방정부와의 협력 노력 및 성과 우수조직(4점) ■ 아래의 유통정책 활성화 기여 우수조직(6점) -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신규 판로 개척 노력 및 성과 - 전자송품장 활용한 물류효율화 노력 및 성과 - 정부 예산 활용 등 통합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■ 통합조직(단체) 정부표창 : 농식품부 장관 표창(2점) * 농산물 유통 혁신대전 등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부 표창에 한해 가점 부여 ■ 생산유통판매 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실적(2점)	최대 10점
감 점		■ 자료 제출 비협조·지연 등 : △2점, 입력 오류·단순 기표 : △3점 ■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·제출, 평가 회피, 미평가·미등록	△10점 취소

* 전속취급액 및 공선취급액은 생산자조직과 출자출하조직의 요건을 충족한 조직의 전속출하액을 기준으로 함

사업명	현행(2025)	변경(2026)	변경사유
생산유통 통합조직	Ⅰ. 사업개요 ☐ 대상자 선정 <통합조직에 한정> ○ 공동선별비지원(광역, 지역) ○ APC(일반, 과수거점, 과수유통시설) ○ 산지조직지원 <통합조직 우선·우대> ○ 시설원예현대화 ○ 스마트팜(시설보급) ○ 에너지절감시설 ○ 신재생에너지시설 ○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○ 과수ICT융복합 ○ 과실생산기반조성 ○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○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○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	Ⅰ. 사업개요 ☐ 대상자 선정 <통합조직에 한정> ○ 공동선별비지원(일반, 지역) ○ APC(일반, 과수거점, 과수유통시설현대화) ○ 산지조직지원 <통합조직 우선·우대> ○ 시설원예현대화 ○ 스마트팜(시설보급) ○ 에너지절감시설 ○ 신재생에너지시설 ○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○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○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○ 채소가격안정지원 ○ (삭제) ○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○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	○ 현행화에 따른 수정 ○ 미 우대사항 삭제, 사업명 최신화 및 우대사항 추가
	Ⅱ. 주요 내용 2. 세부요건 * 단,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취급액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가능	Ⅱ. 주요 내용 2. 세부요건 * 단,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취급액 및 전속취급액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가능	○ 평균실적 적용사항 보완

사업명	현행(2025)	변경(2026)	변경사유
	2 세부요건 ☐ 생산유통 통합조직 * 품목 특성상 고구마는 과실류 기준을 적용하고, 마늘, 양파 등 수급관리 중점품목은 별도 심사 가능 <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> ☐ 전 품목	2 세부요건 ☐ 생산유통 통합조직 * 품목 특성상 고구마는 과실류 기준을 적용함 <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> ☐ 전문품목	☐ 별도심사 요건 제외 ☐ 오타 수정
	☐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, 등록 - 승인심사 * 자격요건 검토, 승인심사에서 탈락한 조직은 차기년도에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	☐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, 등록 - 승인심사 * 자격요건 검토, 승인심사에서 탈락한 조직은 차기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형)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	☐ 자구 수정
	☐ 정부지원사업 신청 <원예산업 생산·유통 부문별 정부지원사업> ☐ 시설원예현대화 ☐ 스마트팜(시설보급) ☐ 에너지절감시설 ☐ 신재생에너지시설 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☐ 과수ICT융복합 ☐ 과실생산기반조성 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☐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	☐ 정부지원사업 신청 <원예산업 생산·유통 부문별 정부지원사업> ☐ 시설원예현대화 ☐ 스마트팜(시설보급) ☐ 에너지절감시설 ☐ 신재생에너지시설 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☐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☐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☐ 채소가격안정지원 ☐ (삭제) ☐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☐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	☐ 미 지원사항 삭제, 사업명 최신화 및 우대사항 추가

사업명	현행(2025)	변경(2026)	변경사유
	☐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 ○ 평가결과 : 승인요건 미달, 사업추진 부 진, 추진성과 미흡 등의 경우 주의 및 개선요구 조치하고, 2년 연속 승인요건 미달 시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 취소	☐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 ○ 평가결과 : 승인요건 미달, 사업추진 부 진, 추진성과 미흡 등의 경우 주의 및 개선요구 조치하고, 2년 연속 승인요건 미달 시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 중도 취소(해당 품목)	○ 조치사항 구체화
	[붙임2] 생산유통통합 조직 출하·취급 방식 및 실적인정 기준 2. 취급유형 : 공동선 별출하(수탁, 매취), 공 동출하(수탁) ☐ 공선선별(매취)	[붙임2] 생산유통통합 조직 출하·취급 방식 및 실적인정 기준 2. 취급유형 : 공동선 별출하(수탁, 매취), 공 동출하(수탁) ☐ 공동선별(매취)	○ 오타 수정

[붙임1] 생산유통통합조직 취급 전문 품목 분류

구분		품목	평가부류	품목	품목 (부류)	자조금
과실류		사과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배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복숭아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포도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감귤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단감	과실류	○		임의자조금
		뽕은감 (반시, 꽃감 포함)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참다래	과실류	○		의무자조금
		자두	과실류	○		
		베리류	과실류		○	
채소류	엽채류	배추	노지채소	○		임의자조금
		양배추, 시금치, 상추, 미나리, 쑥갓, 부추, 양상추, 브로콜리 등	시설원에 또는 노지채소		○	
	과채류	수박	시설원에	○		
		참외	시설원에	○		의무자조금
		딸기	시설원에	○		임의자조금
		토마토류	시설원에		○	
		오이	시설원에 또는 노지채소	○		임의자조금
		호박	시설원에 또는 노지채소	○		
		가지	시설원에	○		임의자조금
		파프리카	시설원에	○		의무자조금
		풋고추류	시설원에	○		임의자조금
	근채류	무	노지채소	○		임의자조금
		당근	노지채소	○		지역자조금(제주)
	조미 채소류	고추(건)	노지채소	○		임의자조금
		마늘	노지채소	○		의무자조금
		파류	노지채소		○	
		양파	노지채소	○		의무자조금
화훼, 특작		버섯류	시설원에		○	
		분화	시설원에		○	
		절화	시설원에		○	의무자조금
		약용작물	노지채소		○	
서류		감자	시설원에 또는 노지채소	○		
		고구마	노지채소	○		

*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필요

[붙임2]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·취급 방식 및 실적인정 기준

- *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자격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사항임
- * 생산유통통합조직 승인(등록) 관련서류에 첨부, aT의 확인요청, 현장실사 등에서 제시해야하는 자료임

1. 출하유형 : 전속출하·약정출하

□ 전속출하

- (개념) 생산자조직이 출하 계약한 원예농산물의 전량(80% 이상)을 소속한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에 판매권 위임 방식으로 출하하여 상품화 및 판매마케팅을 실시
- (운영원칙) 생산농가는 전속출하를 실시하는 생산자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으로서 소속한 생산유통조직의 운영규칙 및 가입한 생산자조직의 회칙에 따라 전속출하를 실시해야 함
- (전속출하 약정) 생산농가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이 승인한 전속출하 생산자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원생산자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소속한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과의 전속출하 약정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함

□ 약정출하

- (개념) 생산자조직원이 생산한 원예농산물의 일부를 소속한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에 판매권 위임방식으로 출하하여 상품화 및 또는 판매마케팅을 실시
- (운영원칙) 생산농가는 약정출하를 실시하는 생산자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으로서 소속한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운영규칙 및 가입한 생산자조직의 회칙에 따라 약정출하를 실시해야 함
- (출하약정 주체) 생산자조직이 조직원생산자 출하약정물량을 취합하여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며, 조직원생산자는 출하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함
 - * 조직원생산자는 개별적으로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과 출하약정을 체결할 수 없음
 - * 출하약정 내용은 품목의 특성, 생산출하여건, 취급방식(수탁, 매취) 등에 따라 정함

- (출하약정 체결) 출하약정은 품목의 특성, 생산·출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늦어도 최초 수확·출하일 60일 이전에 문서형태로 체결해야 함
- 생산자조직 단위로 출하약정을 체결하고, 약정주체(생산유통통합조직,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), 계약일, 출하판매기간, 취급방법, 관련세부내용, 위반시 제재사항, 약정주체 대표자들의 서명 등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함
- 출하약정서에 조직원생산자별 성명, 생산면적(생산량), 출하약정물량, 생산자 서명을 기재한 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

2. 취급유형 : 공동선별출하(수탁, 매취), 공동출하(수탁)

□ 공동선별(수탁)

- (개념) 공동선별(수탁)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하면서 조직원생산자들이 출하하는 원예농산물(원물)을 정해진 품질등급에 따라 공동선별하고, 품질등급별 판매결과에 따라 공동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정하는 취급방식임
- (공동선별 단위) 생산자조직이 공동선별을 실시하는 기본 단위임
 - 조직의 필요, 여건, 전략 등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생산자조직별 또는 복수 생산자조직 통합형 공동선별·공동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
- (판매·정산 기간) 공동선별 상품의 판매·정산(수취가격 산정) 기간을 정하여 실시함
 - 조직은 사업전략,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·정산(수취가격 산정) 기간을 정하되 최소 1일 이상 최대 15일 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임(권고사항)
- (공동선별 유형) 공동선별(수탁)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취급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은 표와 같음
- (운영규칙) 공동선별(수탁) 취급의 유형, 방법, 제재사항 등 세부규정은 생산유통통합조직 거버넌스에서 정한 운영규칙, 생산출하품질관리 규칙 등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
< 공동선별 유형 : 수탁 >

구분	수확	선별포장	판매	정산	특이사항
A	농가 작업		공동취급		○ 조직원생산자가 품질등급별 선별(포장)을 실시하고 공동정산하는 방법 ○ 품목의 특성, 유통조직의 사업여건, 사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인정 *선별작업 결과에 대한 감독체계가 엄격해야함 ○ 판매 및 정산은 공동으로 실시 ○ (예시) 엽채류, 풋고추류, 딸기 등
B	농가	공동취급			○ 가장 많이 운영하는 취급방식으로 공동선별 작업이 용이한 품목 ○ 품목의 특성, 유통조직의 전략 및 여건에 따라서 공동선별 품질등급 및 작업방식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음
C	공동취급				○ 수확단계에서 품질등급별 선별 실시 ○ (예시) 배추, 무, 감자 등
* 위의 3가지 유형 이외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, 별도 검토를 통해서 인정 가능하나 공동정산은 필수임					

□ 공동선별(매취)

- (용어) ‘계약재배 매취’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, 생산유통 통합 조직은 출하방식을 전속출하 및 약정출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‘계약’이라는 용어가 중복·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
 - * ‘전속출하 및 약정출하’에는 이미 계약의 의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 - * 전속출하 및 약정출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이행되므로 유통조직이 개별농가(조직원생산자 이외)와 계약재배 매취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
- (개념) 공동선별(매취)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하고, 조직원생산자들이 출하하는 원예농산물(원물)에 대해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이 품질등급별 매입가격을 공지하여 품질등급에 따라 공동선별하여 조직원생산자 수취가격을 정하는 취급방식임
 - * 공동선별(수탁)과 다른 점은 농산물의 소유권, 조직원생산자의 수취가격 결정 방식, 대금정산 방식임
 - * 공동선별(수탁) : 판매결과에 따라 수취가격을 정하고, 판매처로부터 대금정산이 있는 후에 조직원생산자에게 정산
 - * 공동선별(매취) : 유통조직이 소유권 획득, 품질등급별 가격 공지, 협의한 시기에 조직원생산자에게 대금정산

- (공동선별 단위) 생산자조직이 공동선별을 실시하는 기본 단위임
 - 조직의 필요, 여건, 전략 등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생산자조직별 또는 복수 생산자조직 통합형 공동선별·공동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
- (매취가격 결정)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사업전략, 사업여건 등에 따라 정하되 생산자조직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방안을 권고함
 - (매취가격의 결정 시기) (출자출하조직)의 사업전략, 사업여건,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파종 전·후, 적과 전·후, 수확(전·후), 출하(전·후) 등 적절한 시기에 매취가격을 정할 수 있음
 - * 생산유통통합조직의 관련 규칙에 매취가격의 산정방법, 결정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함(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생산자조직의 대표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함)
 - (매취가격의 통일성)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소속한 복수 출자출하조직의 품질등급별 매취가격은 가급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함
- (판매·정산 기간) 매취한 상품의 판매는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이 정하여 실시하며, 조직원생산자에 대한 대금정산은 유통조직과 생산자조직이 협의하여 정하되 공동선별 작업 완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실시를 권고함
- (운영규칙) 공동선별(매취) 취급의 유형, 방법, 제재사항 등 세부규정은 생산유통통합조직의 거버넌스에서 정한 운영규칙, 생산출하품질관리 규칙 등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- (공동선별 유형) 공동선별(매취)의 유형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취급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은 표와 같음

< 공동선별 유형: 매취 >

구분	수확	출하	선별	정산	특이사항
D	농가 작업		매취선별 (매취품질등급)		○ 공시한 품질등급에 따른 매취(입고) 공동선별 실시 * 입고 공동선별은 상품화 선별과 구분될 수 있음 * 선별기계선별, 육안선별, 표본선별 등 선별방법은 다양할 수 있음(품목특성, 선별여건, 취급전)
E			매취선별 (매취품질등급)		○ 수확단계에서 공지한 품질등급별에 따른 매취 공동선별 실시 ○ (예시) 배추, 무, 감자 등
* 위의 2가지 유형 이외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, 별도 검토를 통해서 인정 가능하나 공동정산은 필수임					

□ 공동출하(수탁)

- (용어) ‘공동출하’용어는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농산물을 공판장, APC 등에 출하(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운송함)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,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공동출하는 생산자조직화에 기반 한 엄격한 취급방식을 의미함
- (개념) 공동출하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하면서 조직원생산자가 선별·포장 작업을 실시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주도하여 조직원생산자들의 전속출하한 상품을 공동출하(도매시장, 공판장 등) 판매한 후, 조직원생산자별 출하상품의 판매가격(경락가격)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취급방식
 - 선별·포장 작업 :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정한 품질규격, 포장용기, 포장방법을 준수하여 실시
 - 전속출하 : 조직원생산자의 생산량 전량(80% 이상)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판매위탁 실시
 - * 생산유통통합조직(육성조직)은 공선출하(수탁), 공선출하(매취)에 대해서 약정출하를 인정하지만, 공동출하(수탁)는 전속출하만 인정됨에 유의
 -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주도 : 공동출하처 선정, 마케팅전략, 물류관리 등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주도하고, 공동출하 포장상자에는 반드시 생산유통 통합조직명이 기재되어야 함
 - * 생산자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이 출하를 주도하고(출하처 선정, 교섭 등) 통합조직은 정산 관리 등만 담당하는 사례는 불인정, 현장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 페널티 부여
- (공동출하 단위) 생산자조직이 공동출하를 실시하는 기본 단위임
 - 조직의 필요 및 여건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조직을 결성·운영할 수 있음
- (판매·정산 기간) 공동출하 상품은 주로 도매시장, 공판장 등에 출하되므로 판매와 정산은 통합조직이 정한 관련 규칙에 따라 실시
- (운영규칙) 공동출하(수탁) 취급의 유형, 방법, 제재사항 등 세부규정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거버넌스에서 정한 운영규칙, 생산·출하 품질관리 규칙 등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
< 공동출하(수탁) 취급방식 >

구분	수확	선별 · 포장	생산자 출하	공동출하	비고
G	○ 생산자가 직접 실시 ○ 품질등급규격 준수 ○ 수확후관리 규칙 준수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명이 기재된 포장재 사용		○ 전속출하 (계약물량의 80%이상) ○ 생산자조직 단위	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주도하여 실시 ○ 단위 - 생산자조직 - 출자출하조직 등	○ 관련 규칙 - 통합조직 운영규칙 - 품질관리 규칙 등 - 제재 규정 필수
* 위의 취급방식 이외의 경우, 별도 검토를 통해서 인정 가능하나, 판매권한은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위임되어야함					

□ 전속출하 복합취급방식

-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취급전략, 판매전략 등에 따라 조직원생산자가 전속 출하한 농산물의 취급방식을 공동선별(수탁, 매취), 공동출하(수탁)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
- 이 경우 관련 운영규칙, 생산자조직의 조직원생산자 생산 · 출하 · 판매 · 정산 서류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리해야함
- * 약정출하의 경우는 복합 취급방식 불인정
- * 특수한 예외 사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함

3. 실적인정 기준

□ 공통사항

- (규칙 등)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출하방식별(전속출하, 약정출하) 및 취급방식별(공동선별 수탁 · 매취, 공동출하) 품질, 검품, 선별, 가격, 판매, 정산, 운송, 제재(위반 조직원생산자 및 조직)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수록한 규칙(들)을 수립 · 운영하여야 함
 - (표준안) 생산유통 통합조직 운영규칙, 생산유통관리규칙(재배 · 출하 · 품질 · 선별 · 판매 · 정산 등), 생산자조직 회칙
- ☞ 모든 규칙, 회칙 등은 의사결정기구(구성원 등)를 통하여 수립되었음을 입증하는 회의록, 대표자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
- (관련자료 등) 생산유통 통합조직,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출하방식 · 취급방식 등을 관련 규칙에 명시하지 않았거나, 규칙과 다른 경우에 관련 회의, 협의, 내부지침 등에 관한 자료를 문서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(보존기간 최소 3년)
- ☞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구두 답변은 불인정

- (출하약정서) 전속출하 및 약정출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,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 간의 출하계획서(전속출하), 출하약정서(약정출하)를 매년 문서 형태로 작성해야 함
 - 품목 특성, 생산·출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 수확·출하일 60일 이전에 작성완료
 - 생산자조직 단위별 출하계획서(전속출하), 출하약정서(약정출하)를 작성하고, 약정주체(생산유통통합조직,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), 약정일, 출하판매 기간, 취급방법, 관련세부내용, 위반시 제재사항, 약정주체 대표자들의 서명 등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함
 - 출하계획서(전속출하), 출하약정서(약정출하)에는 조직원생산자별 성명, 생산량, 전속출하물량(전속출하), 출하약정물량(약정출하), 서명 등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해야 함
- (생산자조직 생산·출하기록부) 생산자조직은 조직원생산자의 생산·출하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함
 - 출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하며, 생산유통통합조직,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 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함
 - 필수항목 : 생산자조직명, 조직원생산자(성명, 전화번호, 조직가입일, 재배지 주소, 재배면적, 생산량, 출하량, 정산지급금액) 생산자조직 정산금액 합계
 - * 공동선별(매취)의 정산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정금액 작성 가능
 - 조직원생산자 변동현황(조직원생산자 탈퇴·가입, 재배면적, 재배지 개보수, 재배품종, 재해 등), 조직원생산자에 대한 제재사항(제명, 벌금 등) 등을 첨부하여 관리
- ☞ 엑셀, 전산기록 자료를 출력하여 통합조직, 출자출하조직, 생산자조직 대표의 서명이 있는 문서형태의 자료만 인정
- ☞ 문서형태의 자료는 3년 이상 보관 필수(당해 년도 생산·출하기록부와 전년도 생산·출하기록부 비교)
- (기타사항)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복수의 사업소(개별 사업자등록)를 운영하는 경우 실적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

- 통합조직이 복수의 사업소(개별 사업자등록)를 운영하는 경우, 전문(육성) 품목의 총취급액, 전속취급액은 전체 사업소 실적을 기준으로 함(특정 사업소를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)
- 다만, 특정 사업소(개별 사업자등록)가 다른 통합조직에 출자출하조직(또는 출하협약조직)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조직의 사업실적에 포함하고 본사의 사업실적에서 제외함
- * 유의사항 : 특정 사업소(개별 사업자등록)가 본사와 출자출하(또는 출하협약조직)한 통합조직에 사업실적을 이중으로 기록한 경우 해당 사업소를 본사로 둔 통합 조직은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승인받은 경우 취소함

□ 공동선별(수탁)

- (규칙) 전문취급품목별 공선출하(수탁)에 관한 관련 규칙 <공통사항 참조>
- (생산자조직 생산·출하기록부) <공통사항 참조>
- (공동선별기록부) 선별작업을 실시하는 조직(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)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공동선별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함
 - 조직원생산자별 출하물량, 선별결과 품질등급별 물량을 집계한 기록부
 - 출하 및 선별작업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최소 3년간 관리·보관
 - 생산자 직접선별, 수확단계선별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함
 - ☞ 엑셀,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 가능(조직원생산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·집계하여 관리)
 - ☞ 생산자조직의 생산·출하기록부와 대조하여 일치해야함
- (대금정산기록부) 조직원생산자에게 출하 대금을 정산하는 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)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대금정산을 집계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함
 - 대금정산기록부에는 조직원생산자의 품질등급별 물량 및 가격, 공제비용 (선별·포장비, 운송비, 판매수수료 등), 인센티브, 지급대금 등을 포함
 - 조직원생산자에 대한 대금정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최소 3년간 관리·보관해야함
 - ☞ 엑셀,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 가능(조직원생산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·집계하여 관리)
 - ☞ 생산자조직의 생산·출하기록부, 공동선별기록부 등과 대조하여 일치해야 함

- (관련자료) 출하계획서(전속출하), 출하약정서(약정출하), 공동선별 작업일지, 공동선별상품 판매기록부(판매내역, 송품장, 정산서 등)

□ 공동선별(매취)

- (규칙) 전문취급품목별 공선출하(매취)에 관한 관련 규칙 <공통사항 참조>
- (생산자조직 생산·출하기록부) <공통사항 참조>
- (품질규격·매입가격 자료) 품질규격(등급) 및 품질규격별 매입가격 공시 자료
 - 자료에는 공시한 내용, 기간, 대상,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
- (공동선별기록부) 선별작업을 실시하는 조직(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)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공동선별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함
 - 조직원생산자별 출하물량, 선별결과 품질등급별 물량을 집계한 기록부
 - 출하 및 선별작업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최소 3년간 관리·보관
 - ☞ 엑셀,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 가능(조직원생산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·집계하여 관리)
 - ☞ 생산자조직의 생산·출하기록부와 대조하여 일치해야 함
- (대금정산기록부) 조직원생산자에게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조직(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)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대금정산을 집계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함
 - 대금정산기록부에는 조직원생산자의 품질등급별 물량 및 가격, 인센티브, 관련공제비용, 지급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- 출하 및 공동선별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(매취) 이내에 작성하여 최소 3년간 관리·보관해야함
 - * 공동선별(매취)의 정산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정금액 작성 가능
 - * 출하(입고)기간별로 품질등급별 가격은 다를 수 있으나, 품질규격별 매입가격 공시내용과 일치해야함
- (관련자료) 출하계획서(전속출하), 출하약정서(약정출하), 공동선별 작업일지, 공동선별상품 판매기록부(판매내역, 송품장, 정산서 등)

□ 공동출하(수탁)

- (출하방식) 공동출하(수탁)는 전속출하만 인정(약정출하 불인정)
- (규칙) 전문품목별 공동출하(수탁)에 관한 관련 규칙 <공통사항 참조>
- (생산자조직 생산·출하기록부) <공통사항참조>
- (생산자조직 회의록) 공동출하를 안건으로 실시하는 생산자조직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
 - 회의안건 : 출하농가, 출하물량(전속출하), 선별·포장(품질규격, 포장규격 등), 위반자 제재,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하판매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
 - 회의개최 시기 : 매년 최초 출하일의 30일 이전까지 실시해야 함
 - 회의록 작성 : 회의 일시·장소, 의결사항, 참석자, 작성자·대표자 서명, 생산유통 통합조직 대표의 확인 서명 및 서명일시(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명), 회의사진(2매) 첨부
 - 회의록 보관 : 생산자조직 대표는 회의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함
- ☞ 다른 안건과 병행하여 생산자조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
- (공동출하 기획협약) 생산자조직(대표)과 생산유통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) 사업책임자(팀장급 이상)는 공동출하 기획협약(판매처, 출하전략, 판매권 위임 등)을 실시하고(매년 최초 출하일 30일 이전에 실시) 협의결과를 문서 형태로 보관·관리(최소 3년 이상)
- (대금정산기록부)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조직원생산자에 대한 출하대금정산을 집계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함
 - 대금정산기록부에는 조직원생산자의 판매처(도매법인)별 판매 물량 및 금액, 공제비용(선별·포장비, 운송비, 판매수수료 등), 인센티브, 지급대금 등 포함
 - 조직원생산자에 대한 최종 대금정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최소 3년간 관리·보관해야 함
- ☞ 엑셀,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 가능(조직원생산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·집계한 관리기록부만 인정)
- ☞ 생산자조직 생산·출하기록부와 대조하여 일치해야함
- (관련자료) 공동출하상품 판매기록부(판매내역, 송품장, 정산서 등)

[붙임3]

2026년 생산유통통합조직 승인 신청서

신청자	법인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명				설립년도		
	주소						
	연락처	(대표전화)		(휴대전화)			
관리자	직위/성명				연락처	(휴대전화) (e-mail)	
조직현황		(출자출하조직) 개소 / (출하조직) 개소 *없는 경우 0표시					
취급 현황	총취급	품목수	개	취급액	백만원	취급량	톤
	전문육성	신청연도	품목명	취급액(백만원)			취급량 합계(톤)
				전속출하취급	그 외 취급	계	
	전문품목	'26년 실적					
		'27년 전망					
	육성품목						
	합 계						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시 반드시 □에 √ 표시) ☒ 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☒ 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							
* 첨부서류 : 1. 생산유통통합조직 사업계획서, 2. 법인등록증, 3. 사업자등록증 * 전문·육성 취급품목 수가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임							

[붙임4]

2026년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 신청서

신청자	법인명			사업자등록번호				
	대표명			설립년도				
	주소							
	연락처	(대표전화)	(휴대전화)					
관리자	직위/성명			연락처	(휴대전화) (e-mail)			
조직현황		(출자출하조직) 개소 / (출하조직) 개소 *없는 경우 0표시						
취급 현황	총취급	품목수	개	취급액	백만원	취급량	톤	
	전문품목	부류명	품목명	취급액(백만원)			취급량 합계(톤)	
				약정출하 취급	그 외 취급	계		
	전문 품목							
합 계								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시 반드시 □에 √ 표시) ☒ 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☒ 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								
* 첨부서류 : 1. 생산유통통합조직 사업계획서, 2. 법인등록증, 3. 사업자등록증 * 전문·육성 취급품목 수가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임								